

전주지방법원 2021. 11. 17 선고 2020가단1976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영,최경울

피 고 1. B

2. 주식회사 C

변 론 종 결 2021. 10. 6.

판 결 선 고 2021. 11. 17.

주 문

1. 피고 B은 원고에게 79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. 4. 8.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,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 제1항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건물’이라고 한다)에 관하여 피고들 사이에 2019. 7. 29. 체결된 매매계약을 7,9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, 피고 C는 원고에게 7,900만 원 및

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청구의 표시 : 별지 ‘청구원인’ 기재와 같다.

나. 공시송달 판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

2. 피고 주식회사 C(이하 ‘피고회사’라고 한다)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피고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신축 중인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회사로 변경하여 이 사건 건물을 피고회사에게 매도하였는바,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한 이후 이 사건 건물에 D조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므로, 원상회복 및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보전채권액인 7,9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단

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,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당초 건축주로 허가된 사람은 이 사건 건물의 부지 소유자인 E, F, G이었고,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로 허가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, 피고 B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축주로 허가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 B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, 갑 제7,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이 사건 건물을 원시

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나아가 을 제1 내지 5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중단할 시점에 이 사건 건물이 주벽, 기둥, 지붕 등 그 주요 부분이 설치되어 있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, 피고 B이 공사한 부분의 가액(기성고)에 대한 증거도 전혀 없어 가액배상액에 대한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.

따라서 원고의 손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,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임성실

청 구 원 인

1. 당사자들의 지위

원고는 건설공사 중 징크 공사를 하는 공사업자이고, 피고 B은 주택 및 상가, 지붕 기와시공 등을 행하는 건설업자이며,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공사대금 5,000만 원을 지급 받아야 할 채권자입니다.

그 외에 피고 B은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1,000만 원을 편취하였고, 원고로부터 1,900만 원을 대여받은 자입니다.

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B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을 목적으로 전주시 완산구 H 건물(이하 '이 사건 건물'이라고 합니다)을 대물변제받은 자입니다.

2. 피고 B에 대한 청구(공사대금 등)

피고 B은 2017. 3. 23.경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5,800만 원을 2017. 4. 30.까지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주었고(갑제1호증 '각서' 참조), 그 후 2017. 7. 20. 770만 원을 변제한 뒤 변제를 미루다가 2019. 6. 7.경 5,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(채무승인)하였습니다(추후 녹취록을 제출하겠습니다).

피고 B은 2015. 11월경 원고에게 '주주이사 등록과 권리를 행사하게 해주겠다'라고 원고를 기망하여 주주지분에 관한 1,000만 원을 요구한 뒤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(갑제2호증 '거래영수증' 참조).

그 후 원고는 2016년 말경부터 현재까지 피고 B에게 수십 차례 주주등

특을 해줄 수 없다면 1,000만 원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 B 은 현재까지 위 금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.

또한 피고 B 은 2019. 6. 7.경 원고와, 변제기 2019. 6. 13., 금액 600만 원 및 변제기 2019. 7. 30. 또는 2019. 8월 중순, 금액 1,300만 원의 금전지불 각서를 작성한 뒤 위 각 금원을 각 지급 받았고,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(갑3호증 '지불각서' 참조).

따라서 피고 B 은 공사대금 5,000만 원,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금 1,000만 원, 대여금 1,900만 원, 합계 7,9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.

부동산 목록

전주시 완산구 H

일반목구조 기타지붕 2층

단독주택

1층 87.36㎡

2층 45.56㎡, 끝.

